충북대학교 공고 제2023 - 112호
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단체(임금) 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(2023. 3. 13. ~ 3. 20.) 중 충북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1일

충북대학교총장

---

1. 공고 기간

○ 2023. 3. 21.(화) ~ 3. 27.(월)

2. 교섭 요구 노동조합

노동조합 명칭	대표자	교섭요구일자	조합원수 (교섭요구일 현재)
전국대학노동조합	김동욱	2023. 3. 13.	204명

3. 기타

○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충북대학교(총무과)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